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3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1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3년 9월 30일”을 “2024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25